

국제무역거래에서의 서류조건에 관한 비교연구*

- Incoterms® 2010규칙과 UCP 600규칙을 중심으로 -

신 정 식**

-
- I. 서 론
 - II. 서류제공의무와 서류조건의 관계
 - III. Incoterms® 2010규칙의 서류제공의무
 - IV. UCP 600규칙의 서류조건
 - IV. 결 론
-

주제어 : 인코텀즈, 신용장통일규칙, 서류조건

I. 서 론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 이하 CISG¹⁾)에 따르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 본 논문은 경기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1)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입하였고 국제무역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CISG는 매매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위험이전, 상대방의 계약 위반에 따른 권리구제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국의 당사자들은 이들 문제들에

서 매도인은 계약조건에 일치하는 물품인도²⁾³⁾, 서류제공 그리고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⁴⁾, 매수인에게는 계약조건에 따라 대금지급 그리고 물품을 수령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⁵⁾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의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계약서상의 명시적조건(express terms)에 의하여 결정되고,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묵시적조건(implied terms)⁶⁾이나 준거법조건(governing law terms)에 의하여 결정된다. 실무적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운송서류로는 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항공화물운송장, 복합운송증권 등이 있고, 계약관련 서류로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이 있고, 보험서류로는 보험증권, 보험확인서 등이 있고, 그 외 기타서류로 원산지증명서, 검사증명서 등이 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서류인도⁷⁾의무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무이다. 예컨대 신용장결제방식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계약조건에 일치하는 물품을 인도하여도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금지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⁷⁾ 이에 매도인

대하여 통일된 국제적 수준으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CISG를 채택하고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박남규, "Incoterms 2010과 CISG" 「무역상무연구」, 제49권, 2011, p. 44).

2) 인도(delivery)의 개념은 무역법이나 관습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Incoterms® 2010규칙에서 인도는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이 어느 시점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지를 명시하는데 사용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coterms® 2010」,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2011, p. 10).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도라는 개념을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으로 위험이 이전되는 시점을 인도라고 정의하였다.

3) 한국의 민법에서 인도는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으로 인도의 종류로는 현실적인도, 간이인도,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 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는 점유권을 이전하게 되기 때문에 점유권의 양도라고도 한다.

4) CISG 제30조.

5) CISG 제53조.

6) 묵시적조건은 계약이행에 따른 관습(usage)과 관행(practice)을 말한다.

7) 서정두 교수의 "UCP 600 서류심사기준의 문제점과 실무상 유의점에 관한 연구"에서 최근 수출보험계약의 미지급 사고건에서 46건 중 39건이 서류일치성 여부에 관한 분쟁이라고 밝히고 있을 정도로 국제거래에서 서류의 하자로 인한 분쟁이 빈번하다(서정두, "UCP 600 서류심사기준의 문제점과 실무상 유의점", 「무역상무연구」 제33권, 2007. 2, p. 92). 또한 강원진 교수의 "UCP 600 상의 불일치서류의 권리포기요건과 적용에 관한 연구"에서도 UCP를

의 의무는 물품의 계약적합성뿐만 아니라 서류도 계약조건에 일치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조건에 관한 연구는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제무역거래에서 서류조건에 관한 가장 많은 규정과 사용빈도를 보이고 있는 국제규칙은 Incoterms® 2010⁸⁾규칙과 UCP 600⁹⁾규칙이 있다.

Incoterms® 2010규칙에서는 매도인의 서류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고, UCP 600규칙에서는 매도인이 제공하는 서류의 일치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무역거래에서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조건에 관한 규칙을 제공하는 Incoterms® 2010규칙이나 UCP 600규칙은 국제무역거래의 관계 당사자들에게 서류조건에 관한 해석의 불일치성을 줄여주기 때문에 분쟁해결과 무역거래 활성화 측면에서 실무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그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국제무역거래에서의 서류조건에 관한 연구로는 먼저 서정두 교수는 “UCP 600 서류심사기준의 문제점과 실무상 유의점”에서 UCP 600상에 규정된 서류심사 일반조항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ISBP(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적용하면서 은행이 불일치는 최초의 서류제시에서 거절되는 비율이 60~70%를 접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강원진, “UCP 600 상의 불일치서류의 권리포기요건과 적용에 관한 연구 “ 「무역학회지」 제32권 제2호, 2007, 4, p. 2).

- 8) Incoterms 규칙은 1936년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 의하여 탄생된 이래로, 이는 법체계적인 계약표준으로서 인정되었고 국제무역거래의 발전에 부응하고자 정기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Incoterms® 2010 규칙은 관세자유지역의 지속적인 확대, 비즈니스 거래에서 전자통신의 사용증가, 물품이동에 따른 보안문제의 고취된 관심 및 운송관습의 변화 등을 고려하고 있다(서정두, 「Incoterms® 2010」, 청목출판사, 2011, p. 24). Incoterms® 2010의 주요개정 내용은 첫째, 위험의 이전에 관한 분기점을 전통적인 ship's rail 개념을 삭제하고 on board로 개정하였다. 이는 인도 의무 이행 및 위험의 이전에 관한 규정내용의 일치가 이루어 졌다. 둘째, 물품이 운송 중에 여러 번 거절되는 연계매매(string sales)의 관행을 반영하였다. 셋째, 운송비용에 포함되는 컨테이너 터미널 취급경비(THC)를 매수인이 중복하여 부담하지 아니하게 각 규칙별로 명확하게 하였다(박남규, 전제논문, pp. 56-57).
- 9)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가 2006년 10월 25일 파리에서 개최된 ICC 은행위원회에서 승인되어, UCP 600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UCP 600은 신용장 업무를 취급할 때 지켜야 할 제반사항, 해석기준을 규정한 국제규칙으로 신용장거래 시 매우 중요한 해석기준이 된다.

Practice), ICC Opinion에 비추어 볼 때 모순되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실무상 유의점을 제시하였고,¹⁰⁾ 이상훈 박사는 “ICC 국제표준은행관행의 운송서류 관련조항의 실질적 적용에 관한 고찰”에서 ISBP에서 운송서류 관련조항을 신용장거래에서의 서류심사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 및 ICC 은행위원회의 의견 등의 관련사례와 비교·분석을 통하여 ISBP와 사례에서 발생하는 상충되는 문제점이 존재여부 및 ISBP상의 운송서류 관련조항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 외에도 다수의 서류조건에 대한 연구가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신용장통일규칙 또는 국제표준은행관행에 일치하는 서류가 무엇인지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본고에서는 다른 논문과의 차별성을 위하여 무역계약이행에서 매도인의 서류인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Incoterms® 2010규칙과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조건의 일치성을 규정하고 있는 UCP 600규칙을 비교·분석하여 국제거래에서 서류조건에 관한 상무적 효용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의 제2장에서는 국제무역거래에서의 매도인의 서류인도의무와 서류조건과의 관계, 제3장에서는 Incoterms® 2010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도서류와 서류인도의무에 따른 실무상 유의점을 살펴보았고, 제4장에서는 UCP 600규칙에서 요구되는 서류와 UCP 600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서류별 작성시 유의점을 살펴보았고, 상무적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Incoterms® 2010의 각 규칙과 UCP 600규칙의 적용시 실무상 유의점을 살펴보았다. 제5장은 결론으로 Incoterms® 2010규칙의 서류인도의무와 UCP 600규칙에서의 서류조건과 관련하여 실무상 유의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분석방법을 취하였다.

Ⅱ. 서류제공의무와 서류조건과의 관계

1. 서류제공의무의 의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계약서의 명시적 조건에 따라 적절한 시기, 방

10) 서경두, “UCP 600 서류심사기준의 문제점과 실무상 유의점”, 「무역상무연구」 제33권, 2007.

법 및 장소에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약서에 서류인도와 관련하여 별도의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묵시적 조건이나 준거법에 의하여 매도인이 인도하여야 할 서류를 결정하게 된다. 국제무역거래에서 서류인도와 관련된 묵시적 조건에는 Incoterms® 2010규칙이 있고, 준거법으로는 CISG가 있다. 서류인도의무와 관련된 Incoterms® 2010규칙과 CISG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Incoterms® 2010규칙은 무역거래조건(trade terms)을 운송방식에 상관없이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되는 규칙과 해상 및 내수로운송에 사용되는 규칙으로 나누었고, 또한 각 규칙별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대방에 대한 의무를 10개의 조항으로 대칭되게 분류¹¹⁾하였다. 각 규칙에서 매도인의 서류인도 의무는 A1(매도인의 일반적 의무)이나 A8(인도서류)에서 규정하고 있다. A1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상업송장 및 계약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일반적 의무만을 규정하였고, 구체적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한 언급은 A8에서 규정하고 있다.

A8에서 각 규칙별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EXW는 별도의 인도서류를 규정이 없고, F규칙은 A4(인도)에 따라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통상적인 증거서류, C규칙은 통상의 운송서류, D규칙은 A4나 B4(인도의 접수)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¹²⁾ 각 규칙별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서류는 제4장에서 언급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CISG에서는 “매도인이 물품에 관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계약상 요구되는 시기와 장소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¹³⁾ 그러나 CISG에서는 매도인의 의무를 규정만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

11) 매도인의 의무를 A1에서 A10까지 규정하였고, 매수인의 의무는 B1에서 B10까지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3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12) UCP 600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의무로서 서류인도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신용장 결제방식의 경우에는 은행의 조건부지급약정이기 때문에 수익자가 수출대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UCP 600에서 일치하는 제시에 대한 규정은 제14조 내지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13) CISG 제34조.

한 구체적 명시를 하고 있지는 않다.¹⁴⁾ 또한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매도인의 서류인도의 의무와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그러나 재산권 이전을 위하여 또는 기타 사유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서류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¹⁵⁾

서류인도의무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것은 매도인의 서류인도 의무는 계약서상의 당사자간의 명시적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명시적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Incoterms® 2010와 같은 묵시적 조건에 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당사자간에 명시적 합의나 묵시적 조건이 없을 경우에는 CISG와 같은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하게 된다.¹⁶⁾ 또한 Incoterms® 2010은 국제적 통일규칙이지 조약이나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거래의 당사자들이 당해 계약의 해석기준으로서 이를 채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¹⁷⁾ 그러나 CISG는 당사자들이 적용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하는 한 적용된다는 점에서 Incoterms® 2010와 CISG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2. 국제무역거래에서 서류의 필요성

국제무역거래에서 매도인의 물품인도와 동시에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역거래는 격지자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계약조건에 따라 물품을 선적하고 해당 물품 관련 운송서류를 직접 매수인에게 송부하거나 은행을 경유하여 매수인에게 송부하게 되고,

14) CISG에서는 서류제공방법, 시기 및 장소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서류의 인도가 지체되거나 조기 인도된 경우에는 매수인의 구제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매도인이 제시기일까지 서류를 인도하지 않아 매수인이 물품을 수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위반의 정도가 근본적 계약위반(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윤동희·김재성·박세훈,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서류제공 의무에 따른 실무상 유의점", 「무역상무연구」 제47권, 2010, pp. 53-54).

15) 존, 호놀드 저, 오원석 역, 「UN통일매매법」 삼영사, 2004, p. 306.

16) 박남규, 전계논문, p. 44.

17) 참고로 Incoterms® 2010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Unless otherwise specially states, trade terms under the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and interpreted by the Incoterms® 2010"와 같은 준거문언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에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게 된다.¹⁸⁾ 예컨대, 국제무역거래에서 CIF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매도인은 지정된 선적항의 선박에 물품을 적재하고 물품의 선적을 입증하는 서류를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인이나 은행에 제시하였다면, 운송 중 물품이 멸실되어 목적항에 도착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나 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있다.¹⁹⁾

국제무역거래에서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할 서류는 계약의 조건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할 서류는 인도서류(delivery document)²⁰⁾, 상업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보험서류(insurance documents) 및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등을 요구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서류는 인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Incoterms® 2010 규칙에서 인도서류에는 운송서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자기록²¹⁾을 말한다.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은 EXW, FCA, FAS 및 FOB에서 인도서류는 운송서류가 아닌 부두수취증(dock receipt: D/R)이나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D/O)와 같은 수령증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로 인도서류는 운송서류만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인도서류는 지급체계의 일부로서 기능을 가질 수도 있다.²²⁾ 둘째, 송장은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물품의 명세서, 대금지급청구서 기능을 겸한 서류이다. 송장의 종류에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세관송장(customs invoice), 공용송장(official

18) 서류의 송부방식은 결제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송금방식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인도와 관련서류를 매수인에게 송부하게 되고, 추심이나 신용장은 은행을 경유하여 서류를 송부하게 된다.

19) 당사자간 매매의 본질은 물품이지만 대금지급은 선적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CIF은 상징적 인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양영환·오원석·박광서, 「무역상무」, 삼영사, 2011, p. 189).

20) 인도서류는 인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사용되는 서류로 Incoterms® 2010 규칙의 A8의 제목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21) 운송서류에 상응하는 전자적 기록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전자적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용 가능한 경우에 이에 상응하는 종이서류와 동등한 기능을 하는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22) ICC, 전게서, p. 10.

invoice), 최종송장(final invoice),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등이 있다. 셋째, 보험서류는 국제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에 대하여 보험에 부보하고 보험자로부터 발급받는 서류이다. 보험서류에는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보험증명서(insurance certificate) 등이 있다. 넷째,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된 물품의 목록을 기술한 서류로 포장물품의 수량, 총중량, 순중량, 화인, 일련번호 등을 기재한 것이다. 다섯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통관에 필요한 서류로 관세부과시 양허세율이나 특정세율을 적용시킬 때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서류이다.²³⁾ 다섯째, 기타서류는 당사자간에 상기 언급한 서류이외에 계약에서 요구하는 서류로 대표적으로 검사서류(certificate of inspection)가 해당된다. 검사서류는 수입하는 물품의 품질이 하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수입자가 지정한 검사인이나 전문검사기관가 발행한 서류이다.

상술한 서류들은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인도증빙이나 매수인이 수입통관을 하거나 수입지에서 계약목적물을 수취할 때 필요로 하는 서류로 사용된다.

신용장결제방식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을 인도하고도 신용장상에서 요구하는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다. 예컨대, 신용장에서 전통의 원본선하증권(full set origin bill of lading)을 요구하였지만 수익자가 두통의 원본선하증권을 제시하거나 신용장상에서 환어음을 요구하였는데 수익자가 이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에 의하여 수리되지 않는다.²⁴⁾ 이들 서류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기본서류 뿐만 아니라 각종증명서를 비롯한 임의 서류에도 적용된다.²⁵⁾

3. 서류제공의무와 서류조건과의 관계

국제무역계약에서 매도인은 계약조건에 일치하는 물품인도, 서류제공 그리고

23) 수입국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관세적용, 특혜관세적용, 특정국가로부터 수입제한 및 수입통계 등에 목적이 있다.

24) 이천수,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의 요건”, 「무역상무연구」 제13권, 2000, p. 584.

25) 전계서, p. 584.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이는 물리적 측면에서 하자가 없는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고, 권리적 측면에서도 하자가 없는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²⁶⁾²⁷⁾ 부연하자면 국제무역계약에서 매도인의 의무는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을 인도하고, 또한 물품에 관한 서류를 제공하므로 자신의 인도의무가 이행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거래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면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국제거래의 경우에는 물품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에 물품을 인도한 이후에 물품과 관련된 인도증빙이 되는 서류를 계약조건에 따라 직접 송부하거나 은행을 통하여 송부하고 그 서류가 계약조건에 일치할 경우에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서류제공의무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서류인도시 실무상 유의하여야 할 것은 국제무역계약과 관련하여 매도인은 어떠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그 기재사항은 계약조건에 일치하는지를 항상 유념하여야 하고, 매수인의 입장에서 매도인에 의하여 직접 송부되거나 추심은행이나 개설은행 등의 은행을 통하여 전달·제공되는 운송서류가 당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적합한 것인지를 능숙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서류가 누락되거나 서류의 기재내용이 국제무역계약에 반하는 등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에 대하여 어떠한 구제수단으로써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를 숙지하여야 한다.

요컨대, 매도인의 의무는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뿐만 아니라 서류를 인도하여야 하고, 그 서류의 조건은 국제무역계약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일치하여야만 매도인은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결국 매도인의 서류제공의무는 매도인이 제공하는 서류조건에 일치성까지 확장된다고 볼 수 있다.

26) 윤동희·김재성·박세훈, 전제논문, p. 55.

27) CISG 제30조 및 제34조에서도 매도인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매수인의 서류제공의무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Ⅲ. Incoterms® 2010규칙의 서류제공의무

1. Incoterms® 2010규칙에서 서류제공의무의 의의

Incoterms® 2010규칙은 매도인의 물품인도 의무를 중심으로 운송 및 보험계약의무, 위험이전, 비용의 배분 상대방에 대한 통지의무, 인도서류 등에 관한 의무를 각 규칙별로 매도인의 의무(A1~A10)와 매수인의 의무(B1~B10)를 <표-1> 과 같이 대칭되게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

매도인의 서류제공의무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는 조항은 A1과 A8이다. 반면에 매수인의 서류인도 의무와 관련된 조항은 B8이다. A1은 매도인의 일반적 의무를 A8은 매도인의 인도서류, 그리고 B8은 매수인의 인도의 증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Incoterms® 2010규칙은 매매계약을 완벽하게 해주는 것은 아님을 명시하여야 한다. 예컨대, 매매대금이나 지급방법, 물품의 소유권 이전, 계약위반의 효과에 대해서는 계약의 명시적 조건이나 준거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²⁸⁾

Incoterms® 2010규칙은 무역계약에서 명시적 합의가 없을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인도서류를 묵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Incoterms® 2010규칙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한 명시적조건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28) 박남규, 전계논문, p. 46.

〈표-1〉 Incoterms® 2010규칙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A. 매도인의 의무	B. 매수인의 의무
A1. 매도인의 일반적 의무 (General obligation of the seller)	B1. 매수인의 일반적 의무 (General obligation of the buyer)
A2. 허가, 승인, 보안수속 및 기타 절차 (Licences, authorizations security clearance and other formalities)	B2. 허가, 승인, 보안수속 및 기타 절차 (Licences authorization, security clearance and other formalities)
A3. 운송 및 보험계약 (Contract of carriage and insurance)	B3. 운송 및 보험계약 (Contracts of carriage and insurance)
A4. 인도 (Delivery)	B4. 인도의 접수 (Taking delivery)
A5. 위험의 이전 (Transfer the risks)	B5. 위험의 이전 (Transfer of risks)
A6 비용의 부담 (Allocation of costs)	B6. 비용의 부담 (Allocation of costs)
A7 매수인에 대한 통지 (Notice to the buyer)	B7. 매도인에 대한 통지 (Notices to the seller)
A8 인도서류 (Delivery documents)	B8.인도의 증거 (Proof of delivery)
A9 점검·포장·화인 (Checking-packing-marking)	B9. 물품의 검사 (Inspection of goods)
A10 정보의 협조 및 관련비용 (Assistance with information and related costs)	B10. 정보의 협조 및 관련 비용 (Assistance with information and related costs)

2. Incoterms® 2010규칙의 인도서류

매도인의 일반적 의무를 규정한 A1에서는 매도인은 반드시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상업송장 및 계약에서 요구될 수 있는 기타 모든 일치의 증명서류를 제공하여야 하고, A1내지 A10에서 언급된 모든 서류는 당사자간에 합의되었거나 관습적인 경우에는 이와 동등한 전자기록 또는 처리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Incoterms® 2010규칙에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관습적인 경우에 모든 전자적 통신수단에 대하여 종이서류와 동등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²⁹⁾ A1은 Incoterms® 2010규칙에서 동일한 문장으로 되어 있

다.³⁰⁾

매도인의 인도서류를 규정한 A8에서는 EXW³¹⁾을 제외한 모든 규칙에서 매수인이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인도를 수령할 수 있도록 매도인은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음을 증명하는 운송서류나 기타의 증거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매수인의 인도의 증거서류에 관한 B8에서 매수인은 이러한 증거서류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EXW의 경우에는 인도서류가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인도서류 수령의 의무는 없고, 단지 매수인이 적절한 물품수령증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EXW에서 매도인은 물품의 상태(품질 용적 중량 수량 등)에 관한 점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물품을 수령 확인하기 전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³²⁾ 또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과 비용 및 부담으로 보안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원산지 증명서, 영사송장 등 수출, 수입 또는 제3국 통과에 필요한 서류를 취득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반면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물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물품수령증을 제공하여야 한다.³³⁾

매도인의 인도서류를 규정하고 있는 A8를 각 규칙별로 살펴보면 <표-2>과 같다. EXW에서는 매도인의 인도서류는 없고, FCA에서는 인도서류는 인도의 증거가 되는 서류³⁴⁾, CPT·CIP는 관습이 있거나 매수인이 요청하는 경

29) 서정두, 전계서, p. 48.

30) 반면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영업장구내에서 물품을 수령하였고 이 사실을 입증하는 물품수령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31) EXW는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장구내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무역거래조건이다. 즉, 매도인은 자신의 영업장구내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내의 공장, 작업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적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도인이 물품의 자신의 영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면 되기 때문에 인도의 증거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32) 서정두, 전계서 p. 54.

33) 상계서, p. 47.

34) FCA는 매도인이 운송서류가 아닌 서류, 예컨대, 부두수령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시에 매수인의 위험과 부담으로 운송서류, 예컨대, 유통성 선하증권,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 항공화물운송장, 철도화물탁송장, 도로화물탁송장, 복합운송서류 등을 취득하는데 따른 협조를 하여야 한다.

우에 통상의 운송서류³⁵⁾, DAT·DAP·DDP는 매도인은 반드시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A4나 B4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이 물품의 인도를 접수할 수 있는 서류³⁶⁾, FAS·FOB는 매도인이 반드시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물품이 A4에 따라 인도되었다는 통상적인 증거 서류³⁷⁾, CFR·CIF는 매도인이 반드시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합의된 목적항구까지의 통상적인 운송서류를 지체 없이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표-2〉 Incoterms® 2010규칙별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할 인도서류³⁸⁾

무역거래조건	인도서류
EXW	없음
FCA	인도증거 서류
CPT·CIP	통상의 운송서류
DAT·DAP·DDP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할 수 있는 서류
FAS·FOB	인도증거 서류
CFR·CIF	운송서류

3. Incoterms® 2010규칙에서 서류제공의무에 따른 실무상 유의점

Incoterms® 2010규칙은 상술하였듯이 각 규칙별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

35) CPT·CIP는 관습적이거나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을 입증하는 통상적인 운송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운송서류는 계약물품을 커버하고 선적기일내의 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또 목적지에서 물품을 청구할 수 있고 운송 중인 물품을 매각할 수도 있는 양식이어야 한다. 나아가 운송서류가 유통가능하고 복수로 발행된 때에는 전통의 원본이 제시되어야 한다(상계서, p. 96).

36) DAT·DAP·DDP에서 매수인은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인도지시서나 운송서류 등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7) FAS·FOB에서 인도의 증거가 되는 서류가 운송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매도인은 반드시 매수인의 요청과 위험 및 비용부담으로 해상선하증권,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 같은 운송서류를 취득하는데 따른 협조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8) 이시환·김광수 공저, 「Incoterms® 2010」, 두남, 2011, p. 86.

공하여야 하는 서류제공의무를 A1과 인도서류를 A8에서 규정하고 있다.

매도인이 제공하는 인도서류가 운송서류인 경우에는 매수인은 운송서류를 이용하여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의 인도를 수령할 수 있다. 반면에 운송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매수인은 증거서류에 의하여 운송인으로부터 운송서류를 교부 받게 된다. 이 때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협조를 해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것은 이 때 인도서류가 운송서류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CFR, CIF에서는 인도서류를 운송서류로 규정하고 있다.³⁹⁾ 그러나 FCA에서 부두수취증(dock receipt: D/R), DAP에서는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D/O)도 가능하다. 또한 모든 서류는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관습에 따라 전자기록이나 처리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⁴⁰⁾

Incoterms® 2010규칙은 당사자간에 명시적 합의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의무나 요구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계약서에 이러한 변경의 효과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Incoterms® 2010규칙에서는 구체적인 서류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Incoterms® 2010규칙의 특성상 대금결제에 직접적으로 간여할 성격의 규약이 아니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거래조건에 따른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류조건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IV. UCP 600규칙의 서류조건

1. UCP 600규칙의 서류조건의 의의

UCP 600규칙에서 신용장은 “그 명칭과 상관없이 개설은행이 일치하는 서

39) 매도인이 실무적으로 유의할 것은 CFR, CIF에서 매도인의 의무는 물품을 지정된 항구의 본선에 적재하여야 한다. 이에 해상선하증권이나 해상화물운송장은 선적된 것이어야 한다(상계서, p. 87).

40) Incoterms® 2010규칙에서는 당사자간 합의하거나 관습에 의한 경우에는 모든 전자적 통신수단에 대하여 종이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류제시에 대하여 결제하겠다는 확약으로서 취소가 불가능한 모든 약정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한다.⁴¹⁾ 신용장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수출자가 신용장의 개설은행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제시한 서류가 신용장의 제조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는데, 이를 “엄격일치의 원칙(doctrine of strict compliance)”⁴²⁾이라 하며, 이는 독립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independence)⁴³⁾과 추상성(the principle of abstract)⁴⁴⁾⁴⁵⁾과 함께 신용장 거래의 본질적 특성이다.⁴⁶⁾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은행은 신용장에 명시된 모든 서류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하여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할 경우에는 지급(payment)·인수(acceptance)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시된 서류가 불일치한 제시일 경우에는 지급·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즉, 실무적으로 신용장거래에서 매도인은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을 인도하고서도 서류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신용장대금을 회수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국제무역거래에서 신용장을 대금결제방식으로 하는 수출자는 수출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서류를 준비할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조건은 매도인의 수출대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매도인이 제시한 서류의 일치성을 판단하여야 하는 은행은 주로 UCP 600규칙을 준거 규칙으로 사용한다. 단, 실무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것은 UCP 600은 규칙이기 때문에 신용장의 일치성 판단의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41) UCP 600 제2조.

42) 신용장 서류의 일치성에 대한 이론은 신용장조건이 엄격하게 일치하여야 한다는 “엄격일치성의 원칙”과 신용장조건에 상당하면 서류를 은행이 인수한다는 “상당일치성의 규칙(doctrine of substantial compliance)”이 대립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신용장 관습과 판례는 엄격일치성을 지지하고 있다(서정두, 전계논문, p. 83).

43) 신용장은 그 본질상 그 기초가 되는 매매 또는 다른 계약과 별개의 거래이다(UCP 600 제4조).

44)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은 단지 서류로 거래할 뿐이며, 서류에 관련될 수 있는 물품, 서비스 또는 채무이행으로 거래를 하지 아니한다(UCP 600 제5조).

45)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 그리고 개설은행은 서류에 대하여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가 있는지 여부를 단지 서류에 의해서 심사하여야 한다(UCP 600 제14조).

46) 박세훈, 수출대금결제에서 신용위험 대처방안,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pp. 17~18.

시 신용장상에 준거규칙을 UCP에 따른다는 문언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⁴⁷⁾

2. UCP 600규칙에서 요구되는 서류별 서류조건의 검토

UCP 600규칙에서 서류심사 공통적인 심사기준에 대한 조항은 제14조에서 17조까지이고, 특정서류의 심사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8조에서 28까지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통적인 기준을 제외한 특정서류 중에서 실무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송장, 선하증권, 보험서류에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송장은 선하증권, 보험서류와 함께 국제무역거래에서 기본이 되는 서류로 계약물품의 수량, 단가, 금액, 포장 및 화인 등을 나타내는 뿐만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의 상호 및 주소, 발행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서류이다. 이에 송장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입통관시에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서류이다. 송장과 관련하여 UCP 600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은 ① 수익자가 개설의뢰인 앞으로 발행⁴⁸⁾하였는지, ② 신용장통화와 송장은 같은 통화로 작성되었는지, ③ 송장의 명세가 신용장상의 명세와 상응하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⁴⁹⁾

둘째, 선하증권은 본선의 선장이 발행하는 해상화물에 대한 수취증으로 화물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목적지에서 수하인에게 인도된다. 이에 실무적으로 운송인⁵⁰⁾은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을 보고 정당한 소지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기 때문에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⁵¹⁾

47) 예컨대, 다음과 같은 문언을 명시하여야 한다. "Except so far as otherwise stated, This credit is subject to the UCP(207 Revision) ICC No . 600."

48) 단, 제38조 양도가능신용장이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49) UCP 600 제18조.

50) 우리나라 해운법에 규정하고 있는 운송서류 발행주체로서 운송인은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필하고, 당해 물품운송을 인수한자로서, 수하인 및 그 외 적법한 화물소유자에 대하여 계약상의 운송급부의무 및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로 반드시 선박소유자일 필요는 없고 자기 명의로 송하인과 물품운송계약을 체결한 자이면 된다(운동회·김재성·박세훈, 전제논문, pp. 57-58).

51) 선하증권상에는 선박명, 송하인, 수하인, 선적항, 양륙항 등의 운송상 중요한 사항을 기입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법적기재사항이라고 하고, 나머지 조항은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데 예컨대, 운임 및 특약에 관한 부분을 임의 사항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상업 제814조에서는 1. 선박명칭, 국적과 톤수, 2. 선장의

선하증권과 관련하여 UCP 600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은 ① 운송인의 명칭과 운송책임조항 및 적격한 서명인지, ② 지정된 선적항과 선박상의 본선 적재표기가 정상적인지, ③ 지정된 선적항과 양륙항의 기재, ④ 발행된 원본서류의 전통이 제시되었는지, ⑤ 운송약관에 관한 언급이 명확한지, ⑥ 용선계약에 관한 문언이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⁵²⁾ 기타 선하증권상에 ⑦ 환적, ⑧ 분할선적, ⑨ 수하인 정보, ⑩ 하주의 배서, ⑪ 착화통지처, ⑫ 무고장 요건, ⑬ 물품명세, ⑭ 운임 및 추가비용표시, ⑮ 상기 사항의 정정·변경사실의 표시 등에 하자가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⁵³⁾

셋째, 보험서류는 보험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서로서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발행되며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한 증권이다. 왜냐하면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서류가 양도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⁵⁴⁾

보험서류와 관련하여 UCP 600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은 ① 보험서류의 발행자 및 서명권자가 적격인지⁵⁵⁾, ② 보험서류 원본 전통제시 여부⁵⁶⁾, ③ 보험증개인 부보각서 수리 거절, ④ 보험증권의 대체가능성, ⑤ 보험서류의 발행일자⁵⁷⁾, ⑥ 보험서류 표시통화와 부보금액⁵⁸⁾, ⑦ 면책비율표시⁵⁹⁾ 등에 하자

성명, 3.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또는 포장의 중별, 개수와 기호, 4.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5. 수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6. 선적항, 7. 양륙항, 8. 운임, 작성지와 작성년월일, 수통의 선하증권을 작성한 때에는 그 수에 관하여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상계논문, pp. 56-57).

52) UCP 600 제20조.

53) 서정두, "UCP 600 이후 선하증권 하자관련 분쟁사례", 「무역상무연구」, 제45권, 2012, pp. 132-133.

54) 권오, 「국제무역보험론」, 두남, 2009, p. 47.

55) 보험서류는 보험회사, 보험인수업자 또는 그의 대리인 수입자가 발행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56) 보험서류에 원본이 1부 이상 발행되었다는 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발행된 원본 전통이 제되어야 한다.

57) 보험서류의 발행일자는 운송서류의 선적일자와 동일하거나 그 이전이어야 한다.

58)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다면 보험서류는 신용장 통화와 동일한 통화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용장의 보험부보금액은 최소한 상업송장 금액의 110% 이상을 부보하여야 한다.

59)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다면 소손해면책(franchise) 또는 소율공제면책(excess)이라는 표시가 있어도 하자가 아니다.

가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⁶⁰⁾

3. UCP 600규칙의 서류조건과 Incoterms® 2010규칙의 서류 제공의무와의 관계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인도와 함께 매매계약을 이행하였다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행을 증빙하는 서류는 먼저 명시적조건에 의하여 결정하고 명시적 조건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묵시적조건이나 준거법조건에 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실무적으로는 명시적조건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묵시적조건인 Incoterms® 2010규칙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Incoterms® 2010규칙의 A8조항에서 EXW을 제외하고 모든 규칙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인도서류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매수인에게도 인도서류의 수령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Incoterms® 2010규칙에서는 필요한 인도서류를 규정하고 있지 어떠한 서류의 제공이 매도인의 서류제공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이에 이러한 서류의 일치성 여부는 신용장결제방식의 경우에는 UCP 600규칙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이에 UCP 600규칙의 서류조건과 Incoterms® 2010규칙의 인도서류와 관련하여 E, F, C, D규칙별로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E규칙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인도접수의 관습적인 수령증(buyer's receipt)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령증은 포장명세서상에 매수인이 부기하는 방법이나 기타 적절한 증명이 될 수 있는 서류로 가능하다.⁶¹⁾ 신용장에서 인도의 증거로 수령증을 요구할 때 발급주체에 따라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먼저 매도인이 발급하는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매도인이 스스로 인도증거의 서류로 수령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전적으로 매도인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실무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반면에 매수인이 발급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인도의 확실한 증거는

60) UCP 600 제28조.

61) 서정두, 전계서, p. 61.

될 수 있지만, 매수인이 화물을 인수하지 않거나 고의로 화물 수령증에 서명하지 않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 제3자가 약정된 기일 이내에 약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둔 물품을 수령하였다는 제3자 발행의 수령증을 요구하는 것이 거래당사자들에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⁶²⁾

둘째, F규칙에서 매도인은 반드시 합의된 일자 또는 기간내에 지정된 장소의 합의된 지점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명된 운송인 또는 기타의 자에게 물품을 인도되었다는 통상적인 증거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F규칙에서는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운송인은 매도인에게 통상적으로 물품수령증을 교부한다. E규칙에서와 마찬가지로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발행한 물품수령증은 당사자들이 E규칙과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 F 규칙에서도 운송인 또는 운송주선인이 발행한 물품수령증을 요구하는 것이 신용장거래에서 거래당사자들에게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C규칙에서 매도인은 관습적이거나 또는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에 관한 통상적인 운송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운송서류는 계약물품을 커버하고 선적기일내의 일자가 명기되어야 하고, 또한 목적지에서 물품을 청구할 수 있으면서 운송중인 물품을 매각할 수 있는 양식으로 발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운송서류가 유통가능하고 복수로 발행된 때에는 전통의 원본이 제시되어야 한다.⁶³⁾ C규칙은 매도인의 입장에서 계약이행의 전 과정을 통제할 수 있고, 또한 매수인의 입장에서도 운송인이나 운송주선인이 발행한 운송서류를 제시받기 때문에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규칙보다 신용장거래에 적합한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D규칙에서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매수인이 물품의 인도를 접수할 수 있는 서류, 예컨대 인도지시서(delivery order)나 운송서류 등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매도인의 서류인도의무가 이행된다.

대부분의 신용장거래는 매도인에게 운송인이나 운송주선인에 의하여 발행된 운송서류나 물품수령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D규칙에서 운송서류

62) 박세운, "Incoterms 2010의 주요개정 내용 및 신용장거래에서의 적용상 유의점", 「무역연구」 2011, p. 103.

63) 서정두, 전계서, p. 96.

나 물품수령증이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이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D규칙도 E규칙이나 F규칙에서와 동일하게 신용장거래에서 매도인이 제시하여야 하는 서류의 발급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매도인 측면에서는 운임을 선지급하고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것을 입증하는 운송서류를 제시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매수인 측면에서는 목적지에서 물품을 수령하고 매수인의 서명이 있는 물품수령증을 요구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이에 실무적으로는 제3자 발행 물품수령증을 요구하는 것이 거래당사자들에게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V. 결 론

국제무역거래에서 계약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면 매수인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제무역거래는 격지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물품과 관련된 서류를 거래로 하는 추상적 거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계약당사자들의 계약의무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서류조건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신용장 결제방식의 경우에 매도인은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을 인도하여도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할 경우에는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류조건으로 기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당사자간에 많은 노력과 비용적 손실을 입힌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할 수 있는 국제적 규칙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서류조건과 관련하여 널리 사용되는 규칙으로는 Incoterms® 2010규칙과 UCP 600규칙이 있다. Incoterms® 2010규칙과 UCP 600규칙은 국제규칙으로서 국제적 무역분쟁의 해소와 무역거래의 활성화라는 측면에 서류조건에 대한 해석과 통일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Incoterms® 2010규칙은 서류조건과 관련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인도서류를 규정하고 있고, UCP 600규칙은 신용장거래에서 제시하여야 하는 서류의 공통적 일치성과 각 서류별 일치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규칙들은 그 필요성과 분야에 따라 각기 달리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국제무역거래에서 서류조건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Incoterms® 2010규칙에서는 UCP 600규칙과 같이 구체적 서류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Incoterms® 2010규칙의 특성상 대금결제에 직접적으로 간여할 만한 성격의 규약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지만, 무역거래조건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류조건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예컨대 신용장 방식에 가격조건을 E규칙으로 하였고, 제시하여야 하는 서류가 매수인이 서명 발급한 물품수령증을 제시하여야 할 경우에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Incoterms® 2010규칙하에서는 매도인의 의무는 지정된 인도장소의 합의된 지점에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서 물품을 인도하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그러나 신용장 조건에 매수인의 서명된 물품수령증을 요구하였다면, 매도인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고도 매수인이 물품수령을 거부하거나 서명된 물품수령증 발급을 거절할 경우에는 Incoterms® 2010규칙하에서는 의무를 이행하고도, UCP 600규칙에 따라 대금지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국제무역거래에서 서류조건 문제로 야기되는 이러한 문제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많은 노력과 비용적 손실을 야기시킨다.

상술하였듯이 Incoterms® 2010규칙은 매도인의 서류인도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류가 계약조건에 일치하는 서류인지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신용장거래에서 Incoterms규칙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용장거래에서 UCP 600규칙과 Incoterms® 2010규칙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거래 당사자간에 분쟁의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 효용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원진, "UCP 600 상의 불일치서류의 권리포기요건과 적용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2권, 제2호, 2007.
- 권 오, 국제무역보험론, 두남, 2009.
- 박남규, "Incoterms 2010과 CISG" 「무역상무연구」, 제49권, 2011.
- 박세운, "Incoterms 2010의 주요 개정내용 및 신용장거래에서의 적용상 유의점", 「무역연구」, 제7권, 2011
- 박세훈, "수출대금결제에서 신용위험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서정두, "UCP 600 서류심사기준의 문제점과 실무상 유의점", 「무역상무연구」 제33권, 2007.
- _____, "UCP 600 이후 선화증권 하자관련 분쟁사례", 「무역상무연구」, 제45권, 2012.
- _____, Incoterms® 2010, 청목출판사, 2011.
- 양영환·오원석·박광서, 「무역상무」 삼영사, 2011.
- 오원석 譯, 「UN통일매매법 (제2판)」, 삼영사, 2004.
- 윤동희·김재성·박세훈,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서류제공 의무에 따른 실무상 유의점", 「무역상무연구」 제47권, 2010.
- 이시환·김광수 공저, 「Incoterms® 2010」, 두남, 2011.
- 이천수,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의 요건", 「무역상무연구」 제13권, 2000.
- ICC, 「Incoterms® 2010」, ICC, 2011.
-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 600, 2007)
- UN통일매매법(CISG)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Documentary Conditions of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

Sin, jung sik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hand over any documents relating to the them and transfer the property the to the goods as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buyer must pay the price for the goods and take delivery of them as required by the contract.

In particular, the seller provides the documents is important. If the documents are discrepancies in credit, the beneficiary may not receive the payment. So It is important to study on conditions of documents in international trade.

Documents provided by the seller shall be determined by express terms. If there is no agreement on the express terms, it shall be determined by the implied terms or governing law terms.

In practice Seller shall provide the documents are as follows, For example, transport documents, commercial invoice, certificate of origin, insurance policy, packing list, inspection certificate etc.

As stated above if it can not be determined by express terms, it is determined by the implied terms. In international trade, leading to the implied terms is incoterms® 2010 and UCP 600.

Incoterms® 2010 define the seller must provide the goods and the commercial in conformity with the sales contract and any other evidence of conformity that may be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UCP 600 are rules that apply to documentary credit.

This paper, the practical utility between Incoterms® 2010 and UCP 600

is studied.

Key Words : Incoterms® 2010, UCP 600, Documentary Conditions